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9.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6년 2월 5일, 김선민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6년 2월 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6. 3. 1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회의(2026. 3. 12.)

상정, 축조심사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회의(2026. 9. 15.)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2026. 9. 17.)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선민의원)

응급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전전하다가 제때 치료받지 못하여 사

망하거나 상태가 악화되는 소위 ‘응급실 뽕뽕이’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현행법은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수용 곤란 고지를 반복해서 받은 환자를 의무적으로 수용하는 최종 치료 기관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응급환자의 이송 실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선수용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병원에 대해서는 응급의료기금으로 재정적 지원을 하는 한편, 불가피한 의료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6 및 제63조제3항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신은호)

개정안은 우선수용병원의 지정·운영 및 우선수용병원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일명 ‘응급실 뽕뽕이’로 지칭되는 응급환자의 응급의료기관 수용 지연 및 재이송 문제를 개선하고 응급환자에게 보다 신속하며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 다만,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경감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의 시행 경과 및 성과·보완점을 고려하여 우선수용병원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서 우선수용병원 의료인의 응급의료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선수용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인력의 의료사고에 관한 부담을 줄이고 응급환자 수용을 촉진하여 우선수용병원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다만, 의료인력의 형사처벌 부담완화 방안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검토 경과 및 사회적 합의 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의 감경·면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백종헌)

동 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